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0.>
-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인 것
-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구조 건축물
- 11. 농업 · 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9. 22.,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3. 9. 12.>
-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 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 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 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 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 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 로 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2021. 11. 2.>
-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8. 9. 4.>
-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9. 4.>
- ① 삭제 <2010. 2. 18.>

[전문개정 2008. 10. 29.]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044-201-4337, 044-201-4265

제31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종사자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 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공항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 2. 차량 및 장비를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 3.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가. 공항운영자가 정한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 나. 주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지 말 것
 - 다. 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의 앞을 가로지르거나 주기 중인 항공기의 밑으로 운행하지 말 것. 다만, 해당 항공기에 대한 급유, 화물의 하역 등 항공기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감독기관의 지시나 신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 라. 공항우영자가 지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차량 및 장비를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말 것
 - 마.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전방을 주시할 것
 - 바.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
- 4. 보호구역에 설치되거나 표시된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하지 말 것
- 5.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가연성 물 질 등 위험물을 공항우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말 것
- 6.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
- 7. 보호구역에서 흡연(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하지 말 것
- 8.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운전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 공항운영자에게 운전업무의 승인을 취소하거 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같은 항 제7호를 위반하여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 태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13.]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8, 9, 2017, 12, 26,>

-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이착륙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착륙장을 사용한 자
- 2. 제32조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승인한 사용 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자
- 3. 제36조제1항・제2항・제7항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 4.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 6.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 7. 삭제 <2018. 2. 2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 2, 13.>
- 1. 제31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한
- 2. 제31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한 자

- 3. 제31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4.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5.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별안전교육 실시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8. 9., 2024. 2. 13.>
- 1. 제31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위험물을 지정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하도록 한 자
- 2. 제31조의2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차량 및 장비가 정원 및 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도록 한 자
- 3. 제36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변경・철거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3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5.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 2. 13.>
- 1. 제31조의2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위반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 2, 13.>
- 1. 제31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한 자
- 2. 제31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차량 및 장비를 정원 및 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
- 3. 제31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 4. 제31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한 자
- 5. 제31조의3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지정구역이 아 닌 장소에 위험물을 보관 또는 저장한 자
- 6. 제31조의3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 7. 제31조의3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흡연.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 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자
- 8. 제31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위반한 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 2.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유산법)

[시행 2025. 2. 14.] [법률 제20286호, 2024. 2. 13., 일부개정]

국가유산청(문화유산정책과) 1600-0064

-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 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0., 2023, 8, 8,>
 -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 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 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본조신설 2017. 3. 21.]

-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 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② 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 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3. 21.]

-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8. 8.>
 - 1.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3. 제40조제1항제6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삭제 <2023. 9. 14.>
 - 5. 삭제 <2023. 9. 14.>
 - ② 삭제 <2023. 8. 8.>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1.>
 - 1.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 자
 - 2. 삭제 <2023. 3. 21.>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1.>
 -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삭제 <2023. 9. 14.>
 - 3.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8.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 9. 3.] [대통령령 제34872호, 2024. 9. 3., 타법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61

- 제10조(사격장관리자의 직무) ① 사격장관리자는 종업원을 관리·감독하고, 안전담당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는 경 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총기 관리, 사격 통제, 사격장 시설 안전유지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격장관리자는 사격장에서 사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격장 또는 사격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총기・석궁・실탄 또는 화살이 사격장의 구조・설비나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을 금지하 여야 한다.
 - 2. 라이플격벽식사격장 및 권총사격장에서는 총탄이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탄알받이에 있는 폐탄(廢彈)을 제거하 여야 한다.
 - 3. 라이플자연식사격장 및 권총사격장 외의 사격장에서는 철갑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4. 공기총자연식사격장 외의 사격장에서는 공기나 가스를 필요 이상 고압으로 주입하여 사격하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5. 석궁사격장에서는 현(弦)과 화살의 상태가 양호한지 항상 점검하고, 현이 끊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 6. 총기나 석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해·조립 또는 구조변경을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권총실내사격장 안(사격실, 사격대기실 등 사격장 출입구 안쪽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에서는 흡연을 금 지하여야 한다.
 - 8. 사좌 등 사격실 안에서는 사격자가 사격장관리자 또는 안전담당 종업원 없이 혼자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격자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석궁 관련 경기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사격·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선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권총실내사격장은 사좌 및 사로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10. 그 밖에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격장관리자는 법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14세 미만인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 궁으로 사격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선수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총괄) 042-481-4211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산림치유) 042-481-4124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숲경영체험림) 042-481-1815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산림문화) 042-481-4215 산림청(숲길등산례포츠팀-숲길정책) 042-481-8876 산림청(숲길등산레포츠팀-등산·레포츠) 042-481-4106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18.>

-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 5, 29.]

[제목개정 2020. 2. 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4. 12. 29.]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8. 8877, 8813, 8875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팀-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림-안전보건교육) 044-202-8820, 8993, 8921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溶斷) 또는 가 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 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 6. 이동식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 용단 및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 1.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및 최대가스저장량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2.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할 것
- 3. 밸브·콕 등의 조작 및 점검요령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4. 가스장치실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 5.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를 금지할 것
- 6. 도관에는 산소용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7.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설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 설비(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 8. 이동식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가스집합장치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 9. 해당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보안경과 안전장갑을 착용시킬 것

제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 다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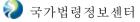
되지 않도록 할 것

- 2.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 3. 장전구(裝塡具)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 4.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5.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 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 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 제447조(흡연 등의 금지)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458조(흡연 등의 금지)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 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493조(흡연 등의 금지)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 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06조(흡연 등의 금지)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 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90조(흡연 등의 금지) ①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또는 그 밖에 방사성물질을 들이마시거나 섭취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 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 다.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제597조(혈액노출 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노출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혈액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화장 및 콘택트렌즈의 교환 등 을 금지할 것
 - 2. 혈액 또는 환자의 혈액으로 오염된 가검물, 주사침, 각종 의료 기구, 솜 등의 혈액오염물(이하"혈액오염물"이 라 한다)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 등에 음식물 보관을 금지할 것
 - 3. 혈액 등으로 오염된 장소나 혈액오염물은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할 것
 - 4. 혈액오염물은 별도로 표기된 용기에 담아서 운반할 것
 - 5. 혈액노출 근로자는 즉시 소독약품이 포함된 세척제로 접촉 부위를 씻도록 할 것
 -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주사 및 채혈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주사 및 채혈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
 - 2.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기는 경우에는 주사침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것
 - 3. 사용한 주사침은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것(부득이하게 뚜껑 을 다시 씌워야 하는 경우에는 한 손으로 씌우도록 한다)

- 4.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여 폐기할 것
-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 등의 섭취 등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 등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2022. 3. 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 2022. 3. 30.,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 044-203-5242

제184조(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기준)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 6.>

- 1. 발생기실에는 기계안전계원 또는 담당 석유광산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표시할 것
- 2. 발생기의 가스배출구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 3. 발생기로부터 5미터 이내 또는 안전기실로부터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불의 사용 그 밖에 불꽃 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계표시를 할 것
- 4. 가스통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구별을 명확히 할 것
- 5. 용접장치의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할 것
- 6. 용접작업을 위한 보호안경과 보호장갑을 비치할 것
- 7. 발생기・안전기・청정기・가스통 등 아세틸렌이 접촉할 염려가 많은 부분에는 구리 또는 구리를 62퍼센트 이상 함유한 합금의 사용을 금지할 것

제186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 또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아세틸렌용접장치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 1. 6., 2022. 1. 21.>

- 1. 사용중인 발생기에는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공기 및 재료를 사용하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2. 용접작업을 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접장치의 각 부분을 검사하여 발생기내에 공기와 아세틸렌과의 혼합 가스를 제거할 것
- 3. 발생기의 사용을 일시 휴지한 경우 남아 있는 카바이트로 인하여 아세틸렌이 발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 높이를 적절히 조절할 것
- 4. 발생기를 수선・가공・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을 장기간 휴지할 때에는 아세틸렌과 카바이트를 제거하여 야 하며, 이동식 발생기의 경우에는 발생기를 분리할 것
- 5. 이동식 발생기는 고온인 장소에 방치하지 아니할 것
- 6. 안전기는 용접작업중 용이하게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아야 하며, 작업계속중에는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 7. 발생기로부터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불의 사용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8. 카바이트관을 개봉할 때에는 충격 그 밖에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9. 이동식 발생기에 카바이트를 넣을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행할 것
- 10. 카바이트의 재는 아세틸렌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쇠조리에 넣어두거나 안전한 장소에서 처리할
- 11. 폭발성물질·발화성물질·인화성물질 등 가연성물질이 있는 부근에서 용접작업을 하지 말 것
- 12. 알콜・휘발유・타르류・기름류・황산 그 밖의 휘발성 화공약품을 넣었던 용기를 용접 또는 용단할 때에는 충분히 세척한 후 작업을 개시할 것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8호, 2022. 2. 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4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6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 출입업자
- 2.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 1.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4.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022, 2, 3.>
- 1. 제5조제3항 단서,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 2.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 5. 삭제 <2019. 3. 26.>
- 6.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 7.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 10.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 11.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1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자
- 1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군 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 14.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 1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16.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17.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
- 18.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19.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020. 2. 4.>
- 1. 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 2.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3.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
- 4.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자

- 5.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자(제6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
- 9.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10.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가스 공급자
- 10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한 자
-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 유가스 사용자
- 12.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 유가스 사용자
- 13.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업자단체, 액 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 14.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 용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 2. 제49조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6. 12. 18.] [대통령령 제35079호, 2024. 12. 1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흡연·음주 행위
-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1. 6.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5호, 2024. 1.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 2024. 1. 9.>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 4. 삭제 <2014. 1. 28.>
-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 당한다)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 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나. 국가비상사태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 8.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개정 2019. 8. 27.>
-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 게 납부할 것
-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 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 ④ 제21조제10항에 따라 운행기록증을 붙여야 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된 운행기간 중 해당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 6., 2017. 3. 21., 2020. 6. 9.>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①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

- 16 / 30 -

자・임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 ②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28.>
- ③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3, 23.>
- ④ 운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나 금지행위를 유 발한 물건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본조신설 2012. 5. 23.]

[제목개정 2014. 1. 28.]

-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9.>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2.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
 - 6.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 6의2.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 7.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②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 다)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③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의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항상 게시하거나 전자적 매체 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 ⑤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4. 7.]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약칭: 위험물선박운송규칙)

[시행 2022. 5. 18.]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2. 2. 1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7

제50조(화기취급의 제한) ① 화약류의 하역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이것을 적재한 장소 및 이 부근에서는 흡 여을 하거나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장이 이러한 행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장은 제1항의 장소에 흡연 또는 화기의 취급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제62조(적재방법) ①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를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 이동, 전도, 충격, 마찰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 2. 선체의 강재부분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중량물을 포개어 쌓지 말 것
- 4. 화기나 열기의 우려가 없고 거주 장소로부터 떨어져 있는 장소에 적재할 것
- 5. 석탄고나 석탄을 적재한 화물창이나 이 장소의 바로 위 갑판부분에 적재하지 말 것
- 6. 갑판상부적재하는 경우에는 직사 일광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② 인화성고압가스를 갑판하부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 인화성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는 선적하기 전에 밸브가 완전히 닫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밸브를 점 검할 수 있도록 적재할 것
- 2. 하역 중에는 주기관과 보조기관을 운전하지 말 것
- 3. 인화성 고압가스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즉시 하역을 한 상갑판 아래 장소에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스측정을 할 것
- 4. 상갑판 아래의 장소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말 것. 다만, 가스측정을 하여 폭발이나 화재 의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기관을 시동하거나 조리를 위하여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인화성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148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 8. 6.]
- 제152조(화기 등의 사용제한) ①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하는 장소, 적재한 장소, 이 부근 또는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장소로부터 나와 있는 통풍통 부근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또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선장은 제1항의 장소에 흡연과 화기의 취급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 기관을 시동하는데 불꽃 또는 전기점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가스의 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 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장소에서는 성냥, 철제공구나 그 밖에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쇠굽이 붙어있는 신발 을 신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0. 8. 6.]
- 제156조(화기취급의 제한 등) ① 유탱커 안에서는 흡연하거나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장이 이 러한 행위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선장은 용무 없는 사람이 선내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③ 유탱커 안에서는 안전성냥 외의 성냥 및 순수한 철제공구나 그 밖에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쇠굽이 붙어있는 신발류를 신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선장은 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제1항과 제2항의 금지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 유탱크와 코퍼댐에서는 방폭형의 회중전등 및 이동등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가스 측정을 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것을 선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유탱크 안의 가스를 뺀 경우에는 증기(蒸氣)이젝터(EJECTOR)를 사용하는 등 수증기를 고속으로 탱크 안에 분출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0. 8. 6.]

제198조(화재예방장치) 면화를 하역하는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 1. 굴뚝에는 불꽃의 토출을 방지하는 데에 충분한 장치를 하여 둘 것
- 2. 면화를 하역하는 장소 또는 이를 적재하고 있는 장소 및 그 부근에서는 흡연, 화기취급, 성냥 또는 그 밖에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을 지니지 아니할 것. 다만, 선장이 이러한 행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 충분한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다른 선박이 접선할 경우에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화기를 충분히 감시할 것 [전문개정 2010. 8. 6.]

제234조(화기취급의 제한 등) 화약류 외의 위험물 저장선에서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 안전성냥 외의 성냥이나 쇠굽이 붙어있는 신발류를 착용하거나 피복(被服)으로 싸지 아니한 철제공구와 같이 불꽃을 유발하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지 말고 안전하지 않는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 2. 하역을 할 경우에는 화기를 취급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 3. 하역 전에 소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것
- 4. 하역을 마친 경우에는 위험물을 취급하였던 장소를 청소할 것

[전문개정 2010. 8.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188호, 2025. 1. 7., 일부개정]

소방청(위험물안전과) 044-205-7488

제4장의2 흡연장소의 지정 <신설 2024. 7. 23.>

- 제18조의2(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제조소등에서 흡연장소를 지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 1. 흡연장소는 폭발위험장소(「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폭발성 가스에 의한 폭발 위험장소의 범위를 말한다) 외의 장소에 지정하는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로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일정한 거리를 둘 것
 - 2. 흡연장소는 옥외로 지정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물 내에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 를 해야 한다.
 - 1.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室)로 하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실내에 체류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출 것
 - 2. 소형수동식소화기(이에 준하는 소화설비를 포함한다)를 1개 이상 비치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흡연장소의 지정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7.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칭: 위험물관리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15호, 2024. 2. 20., 일부개정]

소방청(위험물안전과) 044-205-7488

-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 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27., 2020. 10. 20., 2023. 1. 3., 2024. 1. 30.>
 -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 6.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6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8.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우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③ 삭제 <2014. 12. 30.>
- ④ 삭제 <2014. 12. 30.>
- ⑤ 삭제 <2014. 12. 30.>
- ⑥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 · 징수한다. <개정 2016. 1. 27.>
- ⑦ 삭제 <2014. 12. 30.>

자연공원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 정 2017. 12. 12.>

-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옴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 는 행위
-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
-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 위
- 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행위
-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8. 12. 31.]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 정 2017. 12. 12.. 2024. 2. 6.>

-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 질·생태유해성물질·농약을 뿌리는 행위
-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 는 행위
-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
-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 위
- 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행위
-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25, 8, 7.] 제27조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2017. 12. 12.>

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 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 5.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 6.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 6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 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12.>
- 1. 삭제 <2016. 12. 27.>
- 2. 삭제 <2016. 12. 27.>
- 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2. 2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12. 27.>

[전문개정 2008, 12, 31.]

철도안전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3호, 2025. 1.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40조의3(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철도종사자(제21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4, 18.]

-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8. 9., 2018. 6. 12., 2024. 3. 26.>
 -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 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3. 26.>
- ③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2024. 3. 26.>
- 1. 금지행위의 제지
- 2. 금지행위의 녹음 · 녹화 또는 촬영
- ④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2024. 3. 26.>

[전문개정 2012, 6, 1.]

-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2. 12. 18., 2015. 7. 24., 2017. 8. 9., 2018. 6. 12., 2019. 4. 23., 2019. 11. 26., 2020. 4. 7., 2020. 6. 9., 2022. 1. 18.>
 - 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 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 2. 제8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의2.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3. 삭제 <2020. 6. 9.>
 - 4.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5. 제26조의5제2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 자
 - 9. 제38조제2항에 따른 개선ㆍ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9의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이력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 나. 이력사항을 위조 · 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자
 - 다.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자
 - 9의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9의4.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9의5. 제38조의1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9의6. 제38조의1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10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 11. 삭제 <2020. 6. 9.>
- 12. 삭제 <2020. 6. 9.>
- 13. 삭제 <2020. 6. 9.>
- 13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13의3. 삭제 <2020. 6. 9.>
- 14.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15. 제61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5의2. 삭제 <2020. 6. 9.>
- 16.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7.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8.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7. 24., 2017. 10.
- 24., 2018. 6, 12., 2020. 4, 7., 2020. 6, 9., 2020. 12, 22., 2023. 4, 18., 2024. 3, 26.>
- 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 자
- 2의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지 아 니한 철도운영자등
- 3.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38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조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 5. 제38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 6.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7의2.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방법, 절차 등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 7의3.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 및 용기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 7의4.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
- 8.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
- 8의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 9.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선로는 제외한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 10. 제48조제1항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 장을 준 사람
- 11.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
- 12.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6. 12., 2020. 6. 9.>
- 1.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2. 삭제 <2020. 6. 9.>
- 3. 삭제 <2020. 6. 9.>
- 4. 제20조제3항(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9., 2023. 4. 18., 2024. 3. 26.>
-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
- 2.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 3.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 4. 제4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6. 9.>
- 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조 제1항제14호・제16호 및 제17호,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1호・제2호 및 제5항제1호・제2호만 해 당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2. 12. 18., 2013. 3. 23., 2014. 5. 21., 2015. 7. 24., 2020. 6. 9.> [제81조에서 이동 <2020. 4. 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총포화약법)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56호, 2025. 1. 7., 일부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61

제37조(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 관리자의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 1. 6.]

制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보안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항공보안정책과) 044-201-4233, 044-201-4235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16., 2016. 3. 29., 2020. 6. 9.>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 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접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4. 5.>
-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 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21. 7. 27.>
- 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
- 1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
- 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 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
- 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 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전문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13, 4, 5,]

- 제50조(벌칙) ①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 ②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 1.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 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
 -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

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 3.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⑥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 ⑦ 우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 ⑧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 ⑨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전문개정 2017. 3. 21.]

항공안전법

[시행 2025. 1. 19.] [법률 제18789호, 2022. 1.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4

-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 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8.]
-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